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853

발의연월일: 2022. 8. 12.

발 의 자:이철규·정운천·구자근

이인선 · 김성원 · 노용호

박덕흠 • 서일준 • 한무경

박정하 · 김학용 · 윤주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,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, 공공단 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.

그러나 현행 「실용신안법」은 특허심판에서 '이해관계인'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,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'공중의견'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.

주요내용

가.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(제33조)

- 1) 「특허법」 제154조의3에 '심판참고인 제도'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에서 「특허법」 제154조의3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함.
- 2) 구체적으로 심판장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 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특허심판에서 산업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한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.
- 3)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.
- 4)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인 선정절차, 비용 등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168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. 법률 제 호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 중 "제154조의2"를 "제154조의2, 154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 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	제33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
신안에 관한 심판·재심 및 소	
송에 관하여는 「특허법」 제1	
32조의17, 제133조의2, 제135조	
부터 제137조까지, 제139조, 제	
139조의2, 제140조, 제140조의2,	
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, 제15	
3조의2, 제154조, <u>제154조의2</u> ,	제154조
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, 제15	<u> 의2, 154조의3</u>
8조의2, 제159조부터 제164조까	
지, 제164조의2, 제165조, 제166	
조,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,	
제176조, 제178조부터 제188조	
까지, 제188조의2, 제189조부터	
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	
준용한다.	